

협약서

서울시50플러스재단 중부캠퍼스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(이하 “양 기관”)는 신의와 성실로 50+세대의 인생후반전 지원에 대한 재무상담·금융교육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“양 기관”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“양 기관” 이용하는 50+세대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그와 관련한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원칙) “양 기관”은 상호 협력하여 재무상담·금융교육을 추진하는데 있어 제 규정을 존중하고 호혜평등의 원칙을 준수한다.

제3조(협약사항) “양 기관”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력 한다.

1. “양 기관” 이용 50+세대에 대한 상호협력
2.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, 관련 행사에 대한 지원
3. 협약의 목적이 원활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
4. 공동 기획 및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협조
5. 기타 “양 기관”간의 업무 활성화를 위한 사항 등

제4조(협약기간) 협약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제5조(협약의 변경 및 해지) “양 기관”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. 단,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은 해지된다.

1. 양 기관이 협약 해지를 합의하였을 경우
2. 어느 한 기관의 협약 위반으로 다른 기관이 협약폐기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
3. 단, 이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상호협력이 진행중인 사항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제6조(비밀보장) “양 기관”은 상호 협력사항에 대해 일체의 정보 및 협의사항에 대해서 비밀을 보장한다.

제7조(협약의 준수) “양 기관”은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하고,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에서 1부씩 보관한다.

2017년 8월 10일



센터장 박정만 

관장 고선주 